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20 - 13 - 07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3. 1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다.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3,800,000원

나. 과 태 료 : 10,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 균
관련 매출액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 (2019.2.19.~20.)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교육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019. 2. 20. 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 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가입일시		건
합 계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8.12.9. 미상의 해커로부터 협박메일을 수신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 2018.12.10. 웹호스팅 제공업체인 _____에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
- 2018.12.10.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후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유출 사실 통지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피심인이 운영하는 _____ 홈페이지(_____) 회원가입 정보 49,067건이 유출되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이용자정보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가입일시	49,067건

3) 유출 경로

2018. 12. 9. 외부 IP(222.117. _____)를 사용하는 미상의 해커가 _____ 홈페이지



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목록 내 개인정보를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중 IP, 접속일시를 보존·관리하고 있었으나 접속ID, 개인정보 조회/정정/파기 등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회원 비밀번호를 보안강도가 80비트 미만으로 현재는 보안관련 용도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해시함수(MD5 방식)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4. 2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5. 7.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제1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i)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ii)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iii)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iv)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6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



화)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ex. 보안토큰, 휴대폰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 접속ID, 수행업무(개인정보 조회/정정/파기 등)에 관한 내용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하면서 이를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112비트 이상 보안강도)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2호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패스워드만을 이용토록 하여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④)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작성시 식별자, 수행업무를 누락하여 저장한 행위(고시§5①)
	암호화	§28①4호	§15④1호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 112비트 이상 보안강도)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고시§6①)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 2)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3)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나. 피심인은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한다. 이 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표> 시정명령 공표(안) 예시

공표내용(안)
저희 회사(OOOO)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③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방식으로 저장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 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3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통제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인증수단을 설치하지 않은 피심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



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정보통신부문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을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3,8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원	필수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가중 없음	380만원
	필수적 감경 (50%, 천원)	추가적 감경 (20%, 천원)	
	→ 천원	→ 천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VI.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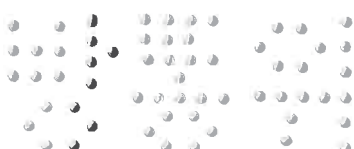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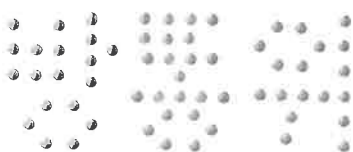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가.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너목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이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4호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계				1,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6호(과징금)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3월 11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욱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김 창 룡

